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먹는물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기술인력의 자격정지 기간) ① 법 제43조2의 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특별한 사유로 납부기한 연기 및 납부를 분할하고자할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.2.21.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(기술인력의 자격정지 기간)</u> ① 법 제43조2의 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<u>제17조</u> (생략)	<u>제16조</u> (현행 제17조와 같음)
제18조(과징금의 납부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(과징금의 납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특별한 사유로 납부기한 연기 및 납부를 분할하고자할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토양지하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79